

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11월 28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5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스마트도시과장)

가. 제안이유

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주민의 참여(안 제4조)

○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 가능

2)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(안 제8조)

-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
-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
-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,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·운영

3)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(안 제10조)

- 위원회의 구성
 - 인 원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구 성: 당연직과 강서구의원, 도시계획·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 도시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19. 10. 4. ~ 10. 24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수용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가. 개정 취지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1) [안 제1~3조] 목적 및 정의
- 2) [안 제4~5조] 주민의 참여과 구청장의 책무
- 3) [안 제6~7조]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4) [안 제8조]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) [안 제9조]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
- 6) [안 제10~16조]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
- 7) [안 제17~18조] 교육 및 홍보

다. 종합 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·운영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에게 더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이며,
- 조례 제정의 필요성, 내용의 정당성,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스마트도시"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·정보통신기술 등을 융·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.

1의2. "국가지범도시"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.

2. "스마트도시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·교통·복지·환경·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3. "스마트도시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

나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,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

다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라.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"스마트도시기술"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.

5. "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·제어·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.

6. "스마트도시건설사업"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

을 말한다.

6의2. "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"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.

7. "스마트도시산업"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
8. "혁신성장진흥구역"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·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 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
제8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
2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4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5.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
6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7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
8.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9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(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)
10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도시·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
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
⑥ 삭제 <2015. 12. 29.>
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24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)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
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
2.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
3. 사업시행자

4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

5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
6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